제255회 제1차 정례회
광 진 구 의 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0. 14.

기획행정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944

2022. 10. 1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. 9. 7.

나. 회부일자 : 2022. 9. 19.

다. 상정일자 : 2022. 9. 30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지영순 행정국장

나. 제출사유

주민투표권 연령하향(19세→18세) 등「주민투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(안 제2조제4항)

○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(안 제3조)

○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(안 제4조)

○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관련 내용 추가(안 제8조제1항 등 신설)

○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고 조문정리(안 제12조 ~ 제15조)

○ 주민투표 관련 서식 정비(별지 제1호 ~ 제7호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주민투표법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○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2. 8.12. ~ 9. 1.)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이경수)

○ 의안번호 제1945호「**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」은 2022년 9월 8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,

○ 「**주민투표법**」(2022.4.26. 공포)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**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**

- 안 **제2조~제4조에서**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규정 삭제,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함.

- 안 **제8조에는** 전자서면청구제도 도입을 규정하였음.
- 안 **제12조 ~ 제15조에서는**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고 조문을 정리하였음.

- **별지 제1호~제7호**에서는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음.

○ **종합 검토의견**

-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「주민투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우리구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정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○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재석위원 **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**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